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0. 5. 31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한국토지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12소기1788) | 한국토지공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오룡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쌍암동·산월동·월계동 일원 소재의 2,399천평 규모의 부지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단지 내 1-1지구(1,660천평)의 일부인 86,961평의 부지를 매각하면서 신문, 팸플릿 등을 통해 “광주첨단수의계약안내”라는 표제하에 단지 내 1-1지구 중 광산구 쌍암동 694-1번지 소재의 43,000평 규모의 부지에 대해 매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정보통신용지”로 표기하고 범례에서 기매각된 토지와 동일한 흰색으로 표시하여 동 용지가 이미 매각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088)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8. 6. 1부터 1999. 10. 30까지의 기간 중 홍보책자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소비자들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반 금융기관들은 대개 농업, 농촌부문에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은행중 유일하게 최첨단 금고업무 종합전산시스템을 갖춘 금고전담 은행이다”, “대부분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은 우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역외로 유출시켜 자금수급을 왜곡... 농업부문의 자금을 전담지원...”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위반 |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홍보책자를 통하여 광고한 서울시 및 경기도 관내 지방자치단체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함 |
| (주)새한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 (2000독관0097) | 주식회사 새한은 1996. 7. 24 그룹 종합기획실장 명의로 계열회사 대표이사들에게 1억원의 공사금액이 소요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모두 계열회사인 새한종합개발(주)를 도급인으로 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책정함에 있어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의 25%를 적용하여 주도록 문서로 지시하였으며, 1999. 1월에서 1999. 9월까지의 기간동안 자신과 계열회사들이 발주한 총 62건의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수의계약의 방법을 통하여 새한종합개발(주)를 도급인으로 하고 동 회사에게 직접공사비의 12.9%~25.3% 수준을 간접공사비를 책정하여 지급, 정 | ◎ 비계열회사를 대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치 |
|---|--|--|
| | <p>당한 이유없이 같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p> | |
| <p>KGI Korea Ltd.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독점0356)</p> | <p>KGI Korea Ltd.는 2000. 1. 7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케이시아이조흥증권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734억원을 납입하고 동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99%에 해당하는 16,319,999주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인 30일을 12일 초과하여 2000. 2. 19 기업결합신고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2조제4항 위반</p> | <p>◎ 과태료 납부 : 1,000천원</p> |
| <p>만도기계(주)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9812독관2222)</p> | <p>만도기계(주)는 계열회사인 한라중공업(주)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 8. 25에서 10. 2까지의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현대자동차(주)로부터 받은 진성어음 1,500억원을 한라중공업(주)에 양도하고 대신 한라중공업(주)가 발행한 용통어음을 받아 한라중공업(주)이 동 진성어음으로 13.25~13.80%의 낮은 할인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 11. 13부터 12. 5까지의 기간동안 한라중공업(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249,465백만원을 13.30~23.00%의 할인율로 매입하였고, 1997. 12. 1부터 12. 30까지의 기간동안 계열회사인 한라펄프제지(주) 등 5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110,200백만원을 21.50~24.50%의 할인율로 매입하였으며, 1997. 12. 1부터 12. 4까지의 기간동안 한라중공업(주)에 대하여 단기자금 151,911백만원을 18.50~24.00%의 금리로 대여하였고, 1997. 12. 2부터 12. 9까지의 기간동안 한라펄프제지(주) 등 4개 계열회사에 대하여 단기자금 37,435백만원을 18.50~24.50%의 금리로 대여하는 등 자신의 계열회사에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p> | <p>◎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 <p>한솔엠닷컴(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0004)</p> | <p>한솔엠닷컴(주)는 1999. 5월초부터 9월말까지 "원샷프리400" 요금상품을 선택한 고객 11,594명 중 1,445명에 대하여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이하 "VIP폰 운영건"이라 함)하여 자신의 고객으로 확보하였는데, 1999. 4. 30 자사 임직원들의 지인이 "원샷프리400" 요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본사가 직접 가입자를 관리하는 VIP폰 운영건을 기획하였으나, 1999. 5월말부터는 동 VIP폰 운영건을 타사의 우량고객 유치수단으로 사</p> | <p>◎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4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치 |
|--|---|--|
| | <p>용하여 대리점별 타사 전환가입자 유치목표를 정하고, 일선 대리점으로 하여금 총 1,048건의 타사 가입자를 유치, 이를 관리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 |
| <p>진주수산물협회의회의 거래 거절강요행위 등에 대한 건 (2000부사0230)</p> | <p>진주수산물협회의회는 비구성사업자로서 자신의 회원들과 수산물도매업자들이 소매업까지 하고, 회원들과 거래하던 소매상들이 회원들에 대한 외상 미수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비회원과 거래하여 예상되는 영업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상들에게 “2000. 1. 5부터는 진주수산물협회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판매하는 생선을 구입하는 소매상에게는 생선을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2000. 1. 7 진주지역 중앙시장 내 소매상들에게 배포하였으며, 1996. 4월 회원이 판매금지대상으로 정한 소매상과 거래를 한 경우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칙에 규정하여 부당하게 거래거절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1999. 12. 14 정기총회에서 신규로 회원가입하여 도매업을 하려는 자가 기존 회원업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시키지 않기로 결의하고, 진주 중앙시장에서 수산물도매업을 영위하는 한진수산이 1999. 12월과 2000. 1. 7에 회원가입 요청을 하였으나 회원가입을 거부하여 서부경남지역 수산물도매업 분야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였으며, 1996. 4월 회칙을 정하면서 관례적으로 지켜오던 영업시간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회칙에 정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제2호 및 제3호 위반</p> | <p>◎ 거래거절강요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구성사업자와 연명하여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4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 <p>18개 부동산중개업소단체 및 4개 부동산정보망회사 등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대한 건 (2000단체0298)</p> | <p>신반포지구부동산중개업질서정화위원회는 1999. 10월 말경 잠원동 소재 음식점에서 총 회원 30명 중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PC정보라인에서 발간하는 부동산정보지를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비회원 사들에게는 배포하지 말 것을 결정, 한국PC정보라인에게 요구하였고, 정보백화점에 대하여도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비회원 업소의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길시 자신의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으며, 중산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 탄현지구중개업자친목회, 행신동공인중개사협회, 주업동중개업자친목회는 각</p> | <p>◎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각각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각 지역별 사업자단체의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p> |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치 |
|--|---|---|
| | <p>각 회칙에 비회원과의 거래금지, 휴무일 지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시행하였으며, 중동신도시부동산협의회는 자신의 윤리규정 제2조에 회원업소는 비회원 중개업소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회원자격 박탈, 벌금부과 등을 규정·시행하였고, 부천시 중동지역에서 발행되는 부동산정보지 '부동산마트미래정보'의 전량을 자신이 일괄구입하는 조건으로 동 정보지를 자신의 회원에게만 배포,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마트미래정보는 중부회 회장 등 4인과 1999. 9. 10경 중동신도시 소개 음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자신의 정보지인 '부동산마트미래정보'를 중부회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는 배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정자동친목회, 서현동친목회, 무지개회, 청심회, 수중회, 양지회, 효자셋별회 및 장안·미래타운회는 (주)까치라인과 협약을 맺고 각각의 비회원에게는 회원이 사용하는 전산망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청심회, 수중회 및 무지개회는 회칙 또는 결의를 통하여 휴무일 지정, 비회원과의 거래금지 등을 시행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및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비구성사업자들과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4호,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p> | <p>토록 하며, 관련 규정 및 회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삭제토록 함</p> |
| <p>(주)라성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0502)</p> | <p>(주)라성은 (주)일조에게 자신의 매장 일부를 제공하여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을 직접 수납하여 관리하면서 수수료 11%를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정기일에 지급한 바, 2000. 1. 16에서 3. 31까지의 기간중 발생된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 2억3700만원을 지급약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주)일조에게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 <p>◎ 점포임차인에 대한 판매대금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

2000. 6. 12 심결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치 |
|--|---|--|
| <p>대규모기업집단 「동아」소속 동아건설산업(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p> | <p>동아건설산업(주)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동아」에 소속된 회사이므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대한통운(주)가 자신의</p> | <p>◎ 대한통운(주)와의 상호출자를 2000. 12. 31까지 해소하라는 시정명령</p>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에 대한 건 (200기업0503) | 주식 1,190,816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 6. 24 대한통운(주)의 주식 1,162,090주를 증여받아 소유하였으며, 대한통운(주)가 1999. 7. 26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한통운(주)의 주식 670,914주를 취득·소유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위반 | ◎ 과징금 납부 : 79,700천원 |

2000. 6. 16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재)대구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원[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9911구사1569) | 재단법인 대구구포성베네딕도수녀원은 대구파티마병원의 장례식장의 관리를 위하여 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와 장례식장 위탁관리 및 사무실 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장례식장 운영규정 등을 통하여 이를 관리·감독하였고, 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는 장례식장 임대계약 업무를 대행하면서 장례식장 내의 장례용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유족으로 하여금 장례식장 내 장례용품매장에서 대림 및 관이불용 삼베 2필을 구입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삼베구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위반 | ◎ 거래강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
| 영동지역 5개 전기공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0전사0130) | 대성전기(주), 경성전기(주), (주)구전기, 남양전설(주), (유)동호전력은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에서 발주하는 1998년도 특수 및 사선단가계약공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호경쟁을 피하기 위해 3차례의 모임을 갖고 특수단가계약공사의 경우 동 입찰에 참가자격이 있는 대성전기(주), 경성전기(주), (주)구전기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대성전기(주)가 낙찰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대상전기(주)에서 (주)구전기에게 575백만원을 지급기로 하고, 사선단가계약공사의 경우 A지역은 남양전설(주), (유)동호전력, (주)구전기, 경성전기(주)가 입찰에 참가하여 남양전설(주)가 낙찰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주)구전기에게 275백만원을 지급기로 하였으며, B지역은 (유)동호전력, (주)구전기, 경성전기(주)가 입찰에 참가하여 (유)동호전력이 낙찰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주)구전기에게 275백만원을 지급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두합의하여 영동군 지역 전기공사입찰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남양전설(주) : 19,200천원 (유)동호전력 : 23,700천원 |

2000. 6. 21 심결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처 |
|---|---|----------|
| (사)대한의사협회 및 (사)대한병원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0737) | (사)대한의사협회 및 (사)대한병원협회는 2000. 7. 1의 약분업제도의 시행에 앞서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시범사업의 실시 등 의약분업제도의 선보완·후시행을 주장하면서, 휴업여부 결정 등은 구성사업자 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2000. 5. 21의 사협회회관 동아홀에서 상임이사 및 의쟁투중앙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보험수가의 현실화, 시범사업 실시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6. 20부터 집단폐업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병원협회는 2000. 6. 15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등 39명이 합동회를 개최하여 파업에 참여키로 한 후 회원에게 동 결의내용을 알리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 ◎ 고발조치 함 |

2000. 6. 22 심결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처 |
|--|---|-------------------------|
| (주)동아오스카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9912부사1746, 2000부사0248) | (주)동아오스카는 1997. 11월부터 1999. 3. 31까지 동아산업(주)의 녹즙기를 판매하던 총판매원으로, 1998. 2월 상호는 동아통상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동아오스카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 10월경부터 독자적으로 녹즙기를 직접 제조하여 생산·판매하면서 자사의 녹즙기 포장박스 상단에 "뉴골드만능녹즙기"라고 표시하고, 하단에는 "명품가전 동아오스카" 앞에 주식회사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아"는 작은 글자체로 "오스카"는 큰 글자체로 표시하여 1999. 11. 18부터 2000. 2월 현재까지 판매하였으며, 자사제품인 뉴골드만능녹즙기의 사용설명서를 제작함에 있어 동 설명서 하단부분에는 포장박스에 표시한 것과 동일하게 "동아오스카" 앞에 주식회사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아"는 작은 글씨체로 "오스카"는 큰 글자체로 표시하였고, 동 설명서 우측상단부분에는 동아산업(주)이 생산하는 오스카 녹즙기 중의 하나인 "오스카 퀴만능요리기" 사진을 게재하여 마치 시장점유율이 1위인 | ◎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처 |
|-------|--|---------|
| | 동아산업(주)의 “오스카” 녹즙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 위반 | |

2000. 6. 27 심결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처 |
|--|--|--|
| (주)서울문화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095) | (주)서울문화사는 1999. 12. 23부터 2000. 1월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여성종합지 우먼센스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인 비교자료도 없이 “최다발행부수, 최고판매부수”라고 광고하여 자신의 우먼센스가 타경쟁지에 비해 발행부수 및 판매부수가 지속적으로 많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위반 |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2000. 6. 28 심결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처 |
|--|---|--|
| 광주청과부류판매(주) 및 광주중앙청과(주)의 중도매인약정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2000약심0656) | 광주청과부류판매(주) 및 광주중앙청과(주)는 중도매인 약정서에 고객인 중도매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래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도매시장의 판매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법적 수속을 개시하였을 때, 거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중도매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정하였으며, 매일 거래 미수금장부를 대조확인한 후 날인할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미수금 잔액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수금 청구소송 수속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 |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도매인약정서 중 해당 조항을 각각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 |